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관세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OECD Update

OECD Final Guidelines on Financial Transactions

November 17, 2020

금융거래에 대한 최종 OECD 이전가격 적용 지침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2020년 2월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의 Chapter X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차입금 여부의 판단

그룹 내 차입법인(Borrowing entity)의 부채 및 자본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유사한 환경에서 운영 중인 독립기업(Independent entity)의 자금조달 비중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OECD 모델 조세조약 제 9 조에 대한 주석은 특수관계법인 간 금융거래에 정상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해당 차입금이 부채인지 아니면 자본인지를 판단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정 KPMG

이전가격 & 관세본부

23 November 2020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이사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다른 특수관계거래와 동일하게, 금융거래에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할 시에는 특수관계법인과 유사한 조건 하에 제 3 자와의 거래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OECD 는 대여법인의 기능분석을 통해 대여법인이 금융자산 투자의 위험 통제와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지 않거나 관련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여법인은 무위험수익률(Risk free rate of return) 이상의 수익을 향유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금전대차거래

OECD 는 그룹 내 금전대차거래를 분석하기 위해 차입법인과 대여법인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와 거래의 경제적 특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3 자 금융기관은 차입법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통해 대여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검토, 평가, 모니터링 및 관리합니다. 신용평가는 회사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차입 사유, 자금의 원천, 차입법인의 현금흐름 예측과 재무상태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OECD 는 신용등급, 신용위험 및 경제환경을 포함한 다음의 상업적 요소들이 특수관계법인과 제 3 자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 **차입법인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회사는 외부공시된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 또는 제 3 자 신용평가기관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국적기업(MNE)의 정량 또는 정성적 특성을 고려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룹 내 금전대차거래에서 차입법인은 회사의 재무데이터, 지리적 위치 및 산업분석을 기반으로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Moody's RiskCalc 모델을 활용하여 차입법인의 종합적인 신용등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그룹 차원의 지원효과:** 회사는 다음의 두 가지 차입 조건을 통해 그룹 차원의 지원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는 제 3 자 금융기관과 체결 가능한 거래의 형식, 조건 및 약관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차입법인의 부도 발생 시 그룹사로부터 지급보증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사 내부의 재정 지원은 차입법인의 신용등급 또는 부채 평가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제한약정:** 금전대차계약 내 제한약정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대여법인의 위험을 제한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장치에는 채무유발제한약정(Incurrence covenant) 또는 재무비율유지약정(Maintenance covenant)이 있으나, 특수관계법인 간 정보의 불균형은 존재하지 않아 그룹 내 금전대차거래에는 제한약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제한약정이 금전대차거래의 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 3 자 간 이루어진 금전대차거래와 동일한 조건 하에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이사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기술해야 합니다.

- **지급보증:** 대다수의 경우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대여자는 차입자의 모회사에게 상환청구(Recourse)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법인 간 지급보증은 금전대차거래의 대가에 영향을 미치며, 차입법인의 채무불이행 시 발생가능한 자금 부족분을 보증인(Guarantor)이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 금전대차거래 분석시 지급보증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룹 내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

OECD 는 다음의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비교가능 제 3 자 가격방법(CUP):** 분석대상 금전대차거래의 정상이자율은 차입법인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보유한 독립기업의 유사한 차입조건 및 약정에 따른 거래를 제 3 자의 외부공시된 데이터를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채권, 예치금, 전환사채와 같은 유사한 자금조달 거래에도 적용이 가능 합니다. 회사는 자금유동성, 만기, 담보, 또는 거래통화 등에 대하여 특수관계거래와 비교대상거래 간의 비교가능성 조정을 통해 중대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Cost of funds):** 비교가능 제 3 자 가격방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가중평균자본비용(Internal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을 활용한 자금조달비용 접근법을 통해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비용은 대여법인의 자금조달 시 발생하는 차입비용 외에도 관련 비용에 대한 적절한 조정, 자금조달 활동에 내제된 경제적 요소를 반영한 리스크 프리미엄의 고려, 그리고 마진의 가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조달비용에는 대여법인이 자금 조달 시 발생하는 자기자본비용(Cost of equity)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s):** 신용부도스와프는 기초 금융자산과 관련한 신용위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회사는 신용부도스와프의 스프레드를 사용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금전대차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프리미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부도스와프는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OECD 는 특수관계법인 간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신용부도스와프를 통한 리스크 프리미엄 추정 시 회사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경제 모델링:** 경제 모델링 하의 이자율은 무위험 이자율(Risk free interest rate)과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 유동성위험, 예상 물가상승율, 만기

등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OECD는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방법을 통해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경제 모델링을 대표적인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모델을 통해 이자율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 **은행신용조사보고서(Bank opinion):** 회사는 자료 구비 목적으로 제 3자 금융기관인 은행에게 그룹 내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신용조사보고서는 약정한 자금거래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OECD는 은행신용조사보고서를 정상가격 산출에 대한 증빙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OECD는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시 수수료 및 비용(Loan fee and charges)에 대한 고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3자 금융기관은 대출 조건 중 하나로 주선수수료(Arrangement fee) 또는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등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또한 그룹 내 금전대차거래 분석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급보증

지급보증이란 법적구속력을 가진 약정으로써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 시 보증인이 해당 채무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차입 시 차입법인은 보다 유리한 조건의 이자로 차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차입법인은 보증인에게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OECD는 지급보증거래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방법**
- **편익접근법(Yield approach):** 지급보증을 통해 감소하는 이자비용 등 피보증인이 얻는 편익을 평가
- **비용접근법:** 보증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평가
- **예상손실접근법(Expected loss approach):**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 시 예상부도율과 예상회수율을 시장 정보를 통해 검토할 수 있으며, Capital Asset Pricing Method(CAPM)을 통해 산출한 예상자본이익률(Expected return on capital)을 기반으로 평가
- **자본지원접근법(Capital support method):** 보증자가 제공하는 자본확충 또는 대체를 기반으로 평가

결론

OECD의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지침은 그룹 내 금전대차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 정책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OECD는 특수관계법인 간 금전대차거래 분석을 위한 신용등급 산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상이자율 및 정상지급보증용역수수료 산출 시 제외 또는 선정 사유의 문서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지 국가의 이전가격규정에 따라 그룹 내 금융거래를 문서화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금융거래로 인한 이전가격조정이 발생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2.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China: Annual 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report; statistics for 2019 and future considerations

November 9, 2020

중국: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에 대한 현황 및 전망

중국은 2019사업연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이하 "APA") 연차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APA제도 소개와 함께 2019사업연도 현황 및 향후 APA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국과세당국(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이하 "SAT")은 2020년 10월 중국 내 APA 현황을 요약한 2019 APA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중국에서 2019년 체결된 APA 건수는 총 21건(일방 APA 12건, 쌍방 APA 9건¹)으로,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19 APA 연차보고서는 2005년부터 2019년 동안 체결된 APA 사례를 아래와 같은 통계자료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1] 2005-2019년 산업별 체결된 APA 건수

(단위: 건, %)

산업 분류	체결된 APA 건수	비중
제조업	141	80%
도소매업	19	10%
서비스업 및 기타	19	10%

¹ 2019년 체결된 APA 총 21건 중 5건은 이익분할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표2] 2005-2019년 거래 유형별 체결된 APA 건수

(단위: 건, %)

구분	유형자산 거래	무형자산 거래	합계
건수	148	96	244
비중	61%	39%	100%

KPMG 의견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 이후 실시된 무역정책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정부기관들은 세수 확보를 위해 높은 수준의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해외 투자를 위해 공정한 조세 행정 체계(Tax administration)를 제공하는 환경을 모색하고 있으며, SAT는 중국 내 경영환경 개선과 자유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AT는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APA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중국사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과의 APA 체결을 통해 이전가격 과세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 구조조정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사업 운영체계, 수행 기능, 무형자산의 배분, 특수관계 거래 및 이익수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지 과세당국은 위와 같은 변화에 주목하여 해당 기업을 이전가격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수익 모니터링 메커니즘(Profit-monitoring mechanism)이 도입됨에 따라 중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납세자는 이전가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거친 기업들은 APA를 신청함으로써 이전가격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PA제도는 납세자들에게 구조조정으로 인한 운영 변화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통해 납세자의 구조조정에 따른 조세 영향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납세자의 조세 예측가능성(Tax certain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품 수입거래

재화의 수입규모가 큰 회사는 중국의 세무당국과 관세청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세무당국은 높은 수입가격으로 인한 현지 과세소득의 감소를 주목할 것이며, 관세청은 낮은 수입가격으로 인한 현지 관세의 감소를 주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 기관의 상반된 과세 관점은 회사의 이전가격 관리에 어려움

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SAT 및 중국 관세청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의 틀(Cooperation framework) 구축과 서비스 혁신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APA를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이점을 취하고 SAT와 관세청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한편 중국 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용역거래 및 무형자산 거래

SAT는 Announcement 6를 통해 특수관계 용역거래 및 무형자산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포함하여 대규모의 복잡한 거래를 수행하는 회사들은 높은 이전가격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APA를 추진함으로써 해당 거래의 사업 배경, 거래 구조 및 이전가격 정책을 SAT에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이전가격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COVID-19의 영향

소매업, 요식업(Catering), 관광업을 비롯한 일부 산업들은 COVID-19 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에 속한 회사의 경영실적은 크게 변동하였으며 향후 사업운영 또한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SAT는 이익 변동폭이 크며 제한적인 위험만을 부담하는 회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APA제도를 활용하여 COVID-19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SAT에 설명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3. 관세이슈 Update

[RCEP서명] 전 세계 30% 아우르는 '메가 FTA' 출범...신남방정책 탄력
연합뉴스, November 15, 2020

RCEP 협정 최종 서명...세계 경제·GDP 30%의 거대 아시아 경제권 탄생
파이낸셜투데이, November 19, 2020

철강·車부품 수혜 기대...RCEP 체결로 아세안 수출시장 '활짝'
아시아경제, November 15, 2020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개요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020년 11월 15일 최종 서명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 FTA를 출범시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거대 시장인 인도가 무역적자 확대 등을 이유로 최종 서명에 불참한 점은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RCEP체결에 따른 국내 효과

-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이며, 메가 FTA 출범이 다자체제 약화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 개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바, 아세안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편의성, 수익성 향상 효과가 예상됩니다.
 - 15 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 통합 및 원산지 증명절차 개선: 과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만 가능했던 협정에 자율 증명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편의성 향상
 - RCEP 협정 참여국 전역 누적기준 적용 가능: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한 것에 대하여 누적기준 인정받게 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
- 일본과도 최초의 FTA 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으며, 일본과 FTA 체결 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1~5 위(美·中·日·獨·印)와 모두 FTA 를 체결하게 되고 브라질을 제외한 10 위 경제대국과도 모두 FTA 를 보유하게 되는 바, 개방형 통상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RCEP 상품분야 주요내용

- **(對아세안)** 既체결 FTA 를 업그레이드하여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하고 품목별 관세를 추가 철폐하여 관세철폐수준을 국가별 91.9%~94.5%까지 제고(자동차·부품, 철강 등 핵심 품목과 섬유, 기계 부품, 의료위생용품 등의 상품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확보)
- **(對일)** 양국 관세 철폐수준의 경우 품목수는 83%로 동일하나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2%p 추가 관세철폐 (일부 민감품목인 자동차, 기계 등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방품목도 장기(10 년~20 년) 및 비선형 철폐를 다수 활용하여 보호)
- **(對중·호·뉴)** 90%이상 수준으로 양자 FTA 가 체결 되어있던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대부분 既체결 FTA 양허 범위 내에서 개방 수준 유지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